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규정

[제정 2010.12.07.]

[개정 2016.04.22.]

[개정 2016.04.25.]

[개정 2022.04.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 교직원 등의 발명을 효율적으로 보호·장려하고 사업화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기술개발 촉진 및 연구재원 확보에 이바지하며 대외적으로 발명자와 학교의 권리 보호 및 민간에의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양도 및 활용이 가능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을 총칭한다.
2.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상의 발명 이외에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의장법상의 의장의 창작, 상표법상의 상표의 창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등을 포함한다.
3. “특허”라 함은 특허법상의 특허 이외에 실용신안법상의 실용신안등록, 의장법상의 의장등록, 상표법상의 상표등록,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등록,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등을 포함한다.
4. “특허권”이라 함은 특허법상의 특허권 이외에 실용신안법상의 실용신안권, 의장법상의 의장권, 상표법상의 상표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등을 포함한다.
5. “직무발명”이라 함은 강원도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계약교수, 초빙교원, 조교, 직원, 연구원, 학생, 수료생(이하 “발명자”라 한다)이 강원도립대학교, 정부 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법률 또는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강원도립대학교에 귀속하게 된 발명은 직무발명으

로 보며,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개정 2016.4.25.>

6.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것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7.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
8. “처분”이라 함은 교직원등의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특허권에 대한 전용 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 실시 또는 통상실시 등 기술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노하우(Know-how)”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를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10. “기술이전”이라 함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장·반도체배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인 기술 및 디자인·노하우 등 기타의 기술(이하“기술”이라 한다)이 양도·실시권 허여·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지식재산권의 취득·처분·관리·보상과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을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의장법상의 의장, 상표법상의 상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등에 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특허권”은 각각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배치설계권”으로, “발명”은 각각 “고안”, “의장”, “상표”, “컴퓨터프로그램”, “배치설계”로 그리고 “발명자”는 “고안자” 또는 “창작자”로 본다.

제2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4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특허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승계한다.<개정 2016.4.25.>

② 발명자는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표준연구계약서

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발명신고 의무) ① 발명자는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는 발명신고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선행기술조사서는 산학협력단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작성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1. 발명신고서
2. 발명요약서
3. 선행기술조사서

③ 발명신고서, 발명요약서, 선행기술조사서에 기재할 사항과 서식은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제6조(자유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승계결정의 통지) ①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권리의 승계, 출원지원 여부 등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이 권리의 승계를 포기하거나 발명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의 결정을 아니한 때에는 당해 발명은 자유발명으로 본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결정 결과를 지체없이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산학협력단은 당해 발명의 출원과 관련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검토의견에 따라 조정안을 발명자에게 제시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④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권리승계결정 또는 출원지원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지체없이 권리승계합의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출원) ① 산학협력단은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출원지원을 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외부로부터 지원받거나 연구비에 그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학협력단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산학협력단(혹은 발명자가)이 부담할

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발명자는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조정안에 따르지 않고 출원을 할 수 있으며, 출원을 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산학협력단을 출원인으로 하여야 하며, 출원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한다.

④외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발명자로 하여금 출원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⑤산학협력단은 출원을 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식재산권의 등록유지) ①산학협력단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그 동안의 기술이전 실적등을 고려하여 등록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유지를 포기한 지식재산권을 발명자 또는 기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특허등록후의 등록유지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허여받은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기간 동안의 등록유지비용은 당해 기업이 부담한다.

제3장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제10조(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①강원도립대학교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내에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4.25.>

②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교학처장, 기획홍보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처장, 기술거래전문가, 변리사로 한다.<개정 2016.4.22.><개정 2022.4.25.>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
2. 발명에 대한 출원·등록·처분·실시·기술이전 여부
3.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의 등록유지 여부
4.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운용에 관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기술거래전문가와 변리사를 포함하여 10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이 위원장이 된다. <2016.4.22.>

②단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단 산학관리팀장이 된다.

④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발명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기술료

제14조(기술료의 산정) ①기술료의 총 규모는 해당기술 및 제품의 경제적 수명, 시장규모, 연구개발 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착수금(Initial-payment)은 연구개발원가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③경상기술료(Running-royalty)는 기술을 사용하는 자(이하'실시권자'라 한다)가 기술이전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할 경우 당해연도 총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④최저기술료(Minimum-royalty)는 연구개발원가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⑤제1항에 따른 기술료 산정은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또는 기술료 산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다.<신설 2016.4.22.>

제15조(기술료의 징수) ①기술료는 일괄적으로 징수하되, 산학협력단과 실시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기술료의 징수방식을 정하며, 일정 금액의 총기술료 또는 착수금과 경상기술료로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이나 주식으로도 받을수 있다.

②착수금은 해당기술의 기술이전 계약체결시 징수한다.

③경상기술료는 실시권자가 이전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 한 실적에 따라 최장 1년 이내의 단위로 현금으로 징수한다.

④산학협력단은 제2항과 제3항의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실시권자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다.

제16조(기술료의 감면) 산학협력단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권자와 협의하여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실시권자가 본 대학의 창업기업인 경우
2.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기술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실시권자가 교육기관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4.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이 있는 경우

제5장 보상금

제17조(보상금의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처분 또는 기타 기술이전의 대가로 받게 된 수익금에서 출원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 중 일부를 발명자에게 보상한다. 보상금은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지급하되, 동일 건으로 2회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소요경비의 공제는 1회에 한한다.

②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비율은 발명자 70%, 산학협력단 30%으로 한다.

③ 자유발명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의 보상금은 발명자 70%, 산학협력단 20%, 발명자가 지정하는 학과 또는 연구소 10% 등으로 한다.

④ 산학협력단이 출원·등록한 이후 등록유지를 포기한 기술을 실시하거나 기타 이용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의 보상금은 발명자 80%, 발명자가 지정하는 학과 또는 연구소 20% 등으로 한다.

제18조(지원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기술이전의 보상금) ① 당해 발명이 지원기관의 지원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서 지원기관과의 계약에 실시료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료에서 지원기관 해당분을 제외하고 보상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발명자에게 보상비율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지식재산권이 없는 기술이전 보상금) 지식재산권이 없는 기술, 노하우 등을 이전받아 이를 실시 기타 이용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발명자에게 보상하는 비율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외국에서의 실시허락에 대한 특례) 외국에서의 실시허락으로 받게 된 실시료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비율은 발명자 50%와 산학협력단 50%로 한다.

제21조(자문료) ① 기술, 법률, 경영 등의 자문을 제공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산학협력단은 그 수익의 10분의 1을 징수한다.

②자문결과에 따라 기술 및 특허실시료가 발생할 경우 제17조 제2항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제22조(지급기간) ①실시료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③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 시에는 그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보상금 지급시기) ①처분수익금 또는 기술료가 현금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은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하여 미발행주식 확인증과 주식 보관증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당해 실시권자의 주식발행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주식으로 지급한다.

제24조 (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특허가 모방으로 인한 발명(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 칙

제25조(발명자의 의무) ①발명자는 그가 한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특허권 설정 등록, 특허권의 처분 또는 실시허락에 있어서 강원도립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개정 2016. 4. 25.>

②발명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유지 의무) 강원도립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에서 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5.>

제27조(해석 및 시행)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특허법, 실용신안법,의 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규에 따르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산학협력단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단장이 따로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0. 12.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2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25.)

(시행일) 이 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4. 25.)

이 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